

# 2019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- 일 자 : 2019. 4. 24.(수)
- 장 소 :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2019회계연도 1분기 안전총괄실  
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

**안 전 총 괄 실**

# '19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□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4건 25,767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

### ○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: 배상금 2,698백만원

-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이 '13년도분 대부료 과다산정을 이유로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자 '13.8.8.자로 계약을 해지하고, 계약이행보증금 2,038백만원을 시로 귀속하였음
- 이에 법인측은 계약해지 취소소송을 제기('13.8.23)하였고,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패소하게 되었음('18.11.29)
- 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, '13년 市로 귀속한 계약보증금 및 이자액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비비를 재배정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반납함 (원금 2,038백만원 + 이자 660백만원)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건설혁신과	지하도상가 위탁관리	배상금 등 (305-01)	2,697,899,000	'19.1.30

○ **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: 배상금 611백만원**

- ‘남부순환로(개봉역앞) 구조개선공사’ 중 보도공사에서 지중화 민원 해소를 위해 착공이 지연(07.09월→14.10월)되어 발생한 소송임.
  - 시공사 요구 : ‘10.7~’15.12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비 4,285백만원
    - ※ 최초 시공사 남진건설의 법정관리(‘10.1)에 따라 케이에스씨건설로 변경(‘10.6)
- 1심 판결(‘18.11.07)에서는 시공사가 우리시로부터 차수별 준공금 수령 이전에 지급을 요청(‘15.02.26)한 7차, 8차 계약의 간접비를 인정함.
  - 7차 계약 준공금 수령일 ‘15.02.27, 8차 계약 준공금 수령일 ‘15.12.30
    - ※ 4~6차 계약의 간접비는 지급 요청일 이전에 준공금을 수령함에 따라 불인정됨.
- 판결금에 대해 소송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부터 611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함. (최종 판결에 따라 정산예정)
  - ※ 원고는 전체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요구하는 항소를 진행함에 따라 우리시는 판결금 중 추가 감액(감정보완서 오류 등)을 위하여 항소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도로계획과	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(예비비)	배상금 등 (305-01)	610,582,520	‘19.3.4.

○ **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 : 배상금 22,376백만원**

- 재건축, 재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제65조」에 따라 사업구역 내 시유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인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매각하고 있음.
-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당시에 유상 매각된 시유지를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반환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사건임.

- 이번에 예비비를 지급한 3건은 지목이 도로, 구거, 하천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무상양도를 요청하였으나, 당시에 우리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상 도로 등 공공시설로 확인되지 않아 유상매각함에 따라 무상양도 부당이득의 반환소송이 제기되었음.
- ‘응암1주택재건축정비사업’의 조합과 ‘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’의 SH공사와 진행된 2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패소(응암1 ‘18.12.20, 내곡 ‘18.12.19)하였고,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기획조정실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각 11,940백만원, 5,184백만원을 지급하였음.
  - ‘응암1주택재건축정비사업’ 소송의 경우는 재개발에 따른 구획정리 당시 설치된 도로로 입증됨.
  - ‘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’ 소송의 경우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국유재산(도로, 구거, 하천) 등으로 입증됨.
- ‘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’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진행된 소송은 1심은 패소(‘19.02.15)하였으나,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으로서 판결금 이자 증가를 고려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5,252백만원을 가지급하였음.
  - ‘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’ 소송의 경우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국유재산(도로, 구거, 하천) 등으로 입증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22,376,304,670	
도로계획과	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소송			
	응암1주택재건축정비사업	배상금 등 (305-01)	11,940,156,970	‘19.2.15.
	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		5,184,278,910	‘19.2.15.
	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		5,251,868,790	‘19.3.26.

○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: 배상금 82백만원

- 「토지보상법, 제91조 제1항」에 의하면,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협의 취득 후 10년 이내에 해당 공익사업이 폐지,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해당 토지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협의취득('04.8.3.) 하였으나,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('08.12.30.) 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매권을 통지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('17.10.31.)되었음.
- 1심에서 패소('19.2.22)함에 따라 기획조정실로부터 82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하였음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도로계획과	환매권 상실손해 배상청구 소송	배상금 등 (305-01)	81,966,870	'19.2.22.